

각 서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,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.

. . .

상호 또는 법인명:

전화번호:

주 소:

대 표 자:

(인)

주민(법인)등록번호:

기관명:

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귀하